

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

의 안	25-91
변 호	

제출년월일 : 2025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지(상암동 433-4)의 대부계약 체결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: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

나. 대부계약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, 제32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9조, 제31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5조

2) 추진 필요성

- 대부 대상 지번 상암동 433-4은,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내 위치 하고 있으며 면허시험 응시, 운전면허 갱신·재발급 등 공공업무 수행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부 필요

다. 대부 개요

- 대부재산: 공유지 1필지

지 번	지 목	면 적	용 도	비 고
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33-4	잡종지	4,724 m^2	주거외 (운전면허시험장)	

- 대부기간: 2026. 1. 1. ~ 12. 31.(1년간)
- 대부신청(자):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
- 대부사유: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서 활용
- 대 부 료: 금471,337,100원(금사억칠천일백삼십삼만칠천일백원)
- 산출내역

· 개별공시지가(3,991천원)×대부면적(4,724 m^2)×*대부료율(0.025)

* 「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5조(대부료 등의 요율) 제4항제1호 “공용·공공용으로의 사용”

라. 기타사항(향후일정)

- 2025. 8. 구의회 의결
- 2025. 11. 2026년 대부계약 체결(마포구↔한국도로교통공단)